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전 규 안*

최근들어 비영리조직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왔다. 그동안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에 관하여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의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결산서 양식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감사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대상을 개선하고 외부감사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에 자산규모 이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다른 요건을 포함시키고,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하고, 감사주기를 결산주기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업종별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파트 감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감사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감사보수를 지급하며 아파트 감사의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것과 비영리조직의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공시 관련 개선방안으로 공시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며, 불성실공시 비영리조직과 성실공시 비영리조직을 공시하여 적정 공시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비영리조직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규모가 영세한 비영리조직에게는 정부에서 감사와 관련된 일정 비용을 부담해주고, 또한 감사인은 부분적으로는 재능기부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회계기준, 회계감사

1. 서론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정부와 기업 이외의 자발적 비영리단체로서 공공 목적에 봉사하는 조직을 말하며,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국제적·국내적 모든 자발적 민간부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가 성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나 기업(또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므로 나머지 부분은 결국 비영리조직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논문접수일: 2017. 02. 13.

1차 수정본 접수일: 2017. 09. 19.

게재확정일: 2017. 10. 18.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kajeon@ssu.ac.kr), 주저자

비영리조직에 있어서 투명성의 중요성은 영리조직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조직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반대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먼저, 다음의 사례는 비영리조직에서 투명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비리의 열매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 결과 ‘비리 백화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이 먼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감사해보니 공동모금회는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36건, 2148만원여치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124건 1997만원을 썼고, 화환이나 선물 구입에도 150만여 원을 유용했다. 시도 때도 없이 열린 워크숍도 ‘놀자판’이었다.…” (매일경제신문 2010년 11월 21일)

위 사건의 여파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모금 지표인 사랑의 온도계가 2010년 94.2도에 머무르면서 설립 이래 처음으로 100도(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뢰회복을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도입할 것은 도입했다. 기부자 본인들이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부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양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민감시위원회를 발족했고, 사이버신문고제도와 내부공익신고제를 도입했다. 성금이 편중되지 않고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연계시스템도 만들었다 (한국경제신문(2012년 12월 9일) 참조).

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례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이 그 비영리조직의 본래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과는 달리 투

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 된다. 일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례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큰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도 한다. 그러나 기업처럼 자신이 벌어들인 이익을 자신이 소비하는 경우와는 달리 비영리조직의 수입원은 일반 대중의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에 외부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면 위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와는 반대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금이 증가한 비영리조직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수여하는 삼일투명경영대상을 2009년에 받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는 2009년 28억원이던 기부금이 2010년에는 48억원으로 71% 증가하였고, 2010년에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010년 175억원이던 기부금이 2011년에 223억원으로 27% 증가하였다(조선일보(2012년 12월 25일) 참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비영리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비영리조직이 회계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회계정보(재무제표 등)를 작성하였는가를 적절히 외부감사하여야 하며, 비영리조직의 감사받은 회계정보와 그 감사결과를 적절히 공시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존재하여야 하고,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외부감사인이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

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를 중심으로 알아보며 추가로 내부감사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Ⅳ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회계와 감사 및 공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2.1 비영리조직의 중요성과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가 공시한 연간 기부금 수입 상위 20개 비영리조직을 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22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월드비전이 1,967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체 20개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총액은 2조 3,563억원이다. 2조 3,563억원은 2015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온시스템(주)의 매출액(2조 2,274억원)과 유사한 금액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비금융기업 중 77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비영리조직의 기부금은 이용가능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보면 매출액보다는 이익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도의 영

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20개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총액 2조 3,563억원은 기아자동차(주)의 영업이익(2조 2,950억원)과 유사한 금액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비금융기업 중 3위인 현대자동차(주)의 영업이익 4조 2,674억원 다음으로 많고 기아자동차(주)보다 앞선 4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해왔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여 그동안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¹⁾ 예를 들어 비영리조직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회계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2017년 7월에서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비영리조직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동주택(아파트) 감사에 대해서는 실시는 되었으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에 대한 공시는 국제청과 (재)한국가이드스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비영리조직간 비교가 어렵고 이용에 불편이 따르며, 이와 같이 공시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2.2 선행연구의 검토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에 관한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과 회계감사 제도 등에 관한

1) 그동안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일미래재단은 2009년부터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정보공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시상해 왔다. 역대 수상기관들은 잠재 기부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의 투명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상 후에 기부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삼일투명경영대상에 지원한 기관들 중 수상을 하지 못한 기관들 역시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심사평을 바탕으로 운영과 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비영리법인과 함께 하는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안에서 참조).

〈표 1〉 연간 기부금 수입 상위 20개 비영리조직

순위	법인명	기부금 금액 (단위: 원)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22,769,671,143
2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96,744,637,178
3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41,890,458,758
4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33,108,639,027
5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122,973,103,065
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122,855,438,958
7	(복) 삼성생명공익재단	116,799,753,091
8	(학) 연세대학교	106,984,009,816
9	휴먼예금관리재단	105,333,177,819
10	재단법인 한샘드뷰연구재단	102,207,000,000
11	(사) 한국여성전문금융업협회	100,000,000,001
12	(학) 성균관대학	92,236,746,678
13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87,339,692,458
14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72,091,660,128
15	(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64,164,579,193
16	공탁금관리위원회	57,785,761,377
17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56,990,800,000
18	(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52,074,512,894
19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51,233,219,266
20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50,701,657,959
합계		2,356,284,518,809

자료원: (재)한국가이드스타의 “연간 기부금 수입 TOP 20”(2015년 기준)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과 기부금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사립대학의 회계기준과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 종교법인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 비영리조직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과 회계감사 제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로서 김완희 외(2013)와 박성환 외(2015), 서희열(2016) 등이 있다. 김완희 외(2013)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섯 분야(회계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제도)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회계기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회계기준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과 회계정보의 공시대상 및 공시범위의 정립이 필요하고, ‘외부감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외부감사 대상의 정립과 회계감사기준 등 인증기준의 체계화, 외부감사인 등의 선임방법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회계정보 작성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지배구조 개선과 외부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재무관련 정보의 공시강화와 공시정보의 접근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고, ‘회계제도’ 측면의 개선방안으로서 “회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총괄기구(Control Tower)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박성환 외(2015)는 사회복지공익법인 실무자, 공인회계사, 감독관청 관계자, 비영리기관의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박성환 외(2015)는 취약한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감사인의 기능의 내실화, 윤리교육 강화,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와 공시의 표준화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공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현행 외부감사의무법인(자산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서희열(2016)은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비영리조직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 등록제도의 도입, 비영리조직 공익성 검증체계의 개선, 기타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비영리조직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 관리체계의 일원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 철저, 비영리조직 평가기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리조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 정보공개 필요, 외부감사자료의 미제출시 강력한 제재, 공익법인 외부감사대상의 선정을 제안하였다.

노태일(2016)은 비영리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역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며, 제정된 비영리조직의 일반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기준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과 기부금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로서 신해진과 서희열(2013), 우미향(2015) 등이 있다. 신해진과 서희열(2013)은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실태를 분석하고,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 과세의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우미향(2015)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제도의 개선이 기부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우미향(2015)은 비영리법인의 개선된 회계정보와 규제제도의 도입은 기부자들의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기부금의 증가를 가져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사립대학의 회계기준과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황인태 외(2013)와 서수덕(2014) 등의 연구가 있다. 황인태 외(2013)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전면 확대와 회계감리제도의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실행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립대학 회계감사 기준의 제정과 감리업무규정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서수덕(2014)은 국내 사학기관의 재무상태와 운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사립대학의 운영특성을 회계적 측면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실무와 회계이론 체계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로서 김광운(2005), 정병옥 외(2010), 노병성과 이우창(2011), 강태균(2014), 이천화 외(2016), 조성표(2016) 등이 있다. 또한 비영리조

직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로는 박정우 외(2004), 전병욱(2012), 윤성만과 이강영(2012)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는 김완희 외(2013)와 박성환 외(2015), 서희열(2016), 노태일(2016) 등과 유사하지만,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를 중심으로 최근의 제도와 법률변경을 알아보고, 부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와 달리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둘째, 최근에 시행된 아파트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파트 감사의 시기와 감사보수 및 아파트 감사의 품질관리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실제 공시 사례를 제시하고 외부감사의 근거법률 등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III.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법의 적용대상을 주식회

사에서 비영리법인과 유한회사를 추가하고 외부감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 이외에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외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일부만 추진되다가, 2017년 10월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다.²⁾ 예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표준회계처리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에서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고, 강제이행 조항이 없어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권고를 하였다(제36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2016년 3월 25일) 참조).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대로 외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합하도록 다른 법률(「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강제이행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면 강제이행 조항으로 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권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3.1 비영리조직의 회계 관련 현황과 문제점

3.1.1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 현황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의료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도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의료법인, 사학기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고

2) “...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고, 기업정보를 공개하게 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법률 개정안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샤넬 코리아와 루이비통 코리아 등 이른바 명품 회사들은 모두 유한회사여서 외부감사를 받거나,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 종교나 복지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율을 적용하는 안은 처리했습니다.” (YTN 뉴스 2016년 3월 27일)

있으며, 종교, 장학, 학술, 문화 등 다른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최근까지 없었다. 회계처리기준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1969),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200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1988),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한국회계기준원, 2003)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특수목적에 의한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원 지침서 간에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회계용어, 회계정보의 공시 및 해석에서 혼란을 야기하였다(김완희 외(2013) 참조).

3.1.2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문제점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결산공시양식이 다양하여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데 있다.

3.1.2.1 일관된 회계기준의 문제

비영리조직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다가 2017년 7월에서야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일관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소관부서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각각 다른 회계원칙(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 복식부기 또는 단식부기)을 적용하여 다른 명칭의 재무제표, 다른 종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다르므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비영리조직 간의 재무제표 비교가 어려웠다.³⁾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일관된 회계기

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관된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관련한 일관된 원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외감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원칙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외감법 개정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⁴⁾ 금융위원회는 민법, 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원칙이 없으며 비영리법인 소관법령별로 일부 회계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당수 비영리법인은 회계원칙 자체가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표준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 가능)하고 비영리법인 소관기관이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특성 등을 감안하여, 외감법 개정안의 “표준회계기준”, “비영리법인 회계원칙”을 기초로 구체적인 회계규율을 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소관기관의 회계규율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서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고, 강제이행 조항이 없어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표준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대하여 철회권고를 하였다.

그동안 비영리조직에 대한 일반적 회계기준으로는 2003년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실무와 괴리가 크고 강제력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은 지침서보다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

3) 박성환 외(2013)에 의하면 국제정 홈택스 조사결과 비영리법인별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등 회계기록방식과 인식기준이 상이하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10월 8일”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년 1월 3일” 참조하기 바란다.

성해왔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은 2013년에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2017년 7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감법이나 상법 등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의무 적용대상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시행중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은 각각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①항, 시행규칙 제14조의4).

3.1.2.2 다양한 결산공시 양식

비영리조직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결산공시 양식이 마련되지 않아서 비영리조직의 공시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법률에 근거한 일관된 회계기준이 제정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

재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행히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근거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영리조직은 일관된 회계기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거에 통일된 회계기준 부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기부금을 받는 공익단체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⁵⁾ 또한 ‘월드비전’의 경우에는 ① 감사실 점검 ② 내부 감사 점검 ③ 외부 회계법인 감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장치’를 마련하자 798억원의 기부가 증가하기도 하였다.⁶⁾ 기부금을 받는 공익단체들 스스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이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공익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기부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기부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어린이재단의 2015 회계연도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표 2>의 패널 A에서 보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의 양식과는 다르지만 손익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요약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재단의 경우에는 패널 B에서 보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공시하지 않고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예산과 결

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기부금을 받는 공익단체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결산서를 봐도 어떤 단체가 기부금 중 얼마만큼을 공익사업에 쓰고 얼마만큼을 일반 경비로 썼는지 비교하기 어려웠다. 국내 비영리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NPO공동회’는 이번 주 중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양식 개정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 (뉴시스 2015년 12월 15일)

6) “...월드비전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을 재정 투명성을 엄격하게 높이는 해로 만들었다. 먼저 사회복지단체로는 전례가 드물게 기업처럼 감사실을 설치했다. 감사실 직원 3명이 1년 내내 돈이 새거나 회계 처리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한다. 또 이때부터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다. 1964년부터 내부 감사 보고서를 만든 전통이 있지만 제삼자의 검증을 받아 한 단계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제주체들이 돈 씹씹이를 줄인 시기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기부금 수입을 대폭 늘렸다. 2008년 710억원이 들어왔는데 이듬해인 2009년 962억원으로 1년 사이 35% 늘었다. 작년에는 1425억원이었고, 올해는 1508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오히려 기부금이 798억원이나 늘었고, 비율로 보면 2.1배로 불어난 것이다...” (조선일보 2012년 12월 27일)

〈표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어린이재단의 2015 회계연도 공시 사례 비교

패널 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분			2015년
수익	사업수익	모금수입	522,769,671,143
		복권수입	27,361,000,000
		재산수입	9,682,580,021
		기타	5,487,505,479
	사업수익총계		565,300,756,643
사업외수익		13,230,004,532	
수익총계			578,530,761,175
비용	사업비용	고유목적	630,405,237,247
		사업비	
		사업투자비	1,178,937,160
		일반사업비	13,112,116,990
		일반관리비	21,162,352,408
		기타	37,253,400
	사업비용총계		665,895,897,205
사업외비용		10,636,045,167	
비용총계			676,531,942,372
당기순이익			△98,001,181,197

패널 B: 어린이재단

세출결산서(법인용)

(단위: 원)

과목			구분	정부보조금	법인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예산	0	933,575,000	714,896,000	1,648,471,000
			결산	0	933,573,598	714,895,422	1,648,469,020
			증감	0	1,402	578	1,980
		제수당	예산	0	196,609,000	167,424,000	364,033,000
			결산	0	196,605,530	167,423,250	364,028,780
			증감	0	3,470	750	4,22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예산	0	53,640,000	0	53,640,000

총계			예산	30,207,923,000	17,813,090,000	123,131,158,000	171,152,171,000
			결산	30,199,578,051	6,315,183,959	110,451,667,777	146,966,429,787
			증감	8,344,949	11,496,356,313	12,679,490,223	24,184,191,485

자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www.chest.or.kr>)와 어린이재단(<http://www.childfund.or.kr>) 홈페이지

산의 비교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이 예산과 결산을 제시하고 증감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회계정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예산주의에 입각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부자가 어떤 기관에 기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두 기관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공시”에서는 일관된 양식으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공시되고 있는 자료를 하나의 틀에 맞추어 공시하다보니 총액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

3.2 비영리조직의 감사 관련 현황과 문제점

3.2.1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의 현황과 문제점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

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8)}

또한 공익법인등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감법상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동시행령 제43조).

지금까지 설명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확인 절차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 의무를 강화하였다. 먼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표 3>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확인 절차

대상 공익법인	외부확인 절차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감법상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7)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이라고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등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8) 2014년 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3조의3이 개정되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서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확대되었다.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또한 종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⁹⁾

한편, 주요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대상과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비영리조직이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

<표 4> 주요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대상과 근거법률

구분	주무부처	외부감사대상	근거법률	외부감사의 강제 여부 ¹⁾
비영리공익법인	교육부 등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의
공익법인등	교육부 등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강제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강제
상호 금융 기관	농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대상)	농업협동조합법	강제
	수산업협동조합	해양수산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2015회계연도까지는 3천억원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	강제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신용협동조합법	임의
	새마을금고	행정자치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	새마을금고법	임의
산림조합	산림청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 또는 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산림조합법	임의
학교법인	교육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강제
기부금품 모집자	행정자치부	모집금액 1억원 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강제

1) 위에서 '강제'와 '임의'란 법률상의 규정에 대한 구분임. '강제'란 법에 의하여 강제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경우이고, '임의'란 법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임. '임의'의 경우에도 주무부장관 등이 실제로는 강제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음.

9)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1.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다만,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

외되고 있다. 공익법인들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외감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으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사 등)), 강제사항이 아니다.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강제로 받아야 하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강제규정이지만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외감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이 300억원이며,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농업협동조합보다 바람직한 회계감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기준이 300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하지만 회계감사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산총액 기준이 500억원 이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가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역시 회계감사가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2013년 1월 23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학교법인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다(사립학교법 제31조).

기부금품 모집자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금

액이 1억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이와 같이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 등과 같이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법률상 임의규정인 경우가 있고(임의규정이면 소관부처가 감사를 받지 않게 할 수 있음), 유사한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도 외부감사 대상 기준(자산 300억원 이상 또는 500억원 이상, 자산 이외의 다른 기준 적용 등)이 다르며, 외부감사주기도 1년이 아닌 경우가 존재하는 등 적절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¹⁰⁾ 물론 그동안 외부감사의 확대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 2014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성과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둘째, 각 비영리조직 별로 외부감사의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통일된 관리감독이 어렵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이 의뢰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규정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다른 경우에도 외부감사가 법률상 임의규정인 경우가 많고 소관부처가 각각이어서 통일된 외부감사의 수행이 어렵다.

10) 법률상 외부감사가 임의규정인 경우에도 실제로는 외부감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감사가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 없이 주무부서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임의로 쉽게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3.2.2 아파트 감사의 현황과 문제점

여기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감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과거 주택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외감법상의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으로부터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¹¹⁾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아파트와 관련된 회계기준은 개별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으로써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다.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과 상충될 경우에는 각 시·도별 관리규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감사시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5년 아파트 감사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면 <표 5>와 같다. <표 5>의 패널 A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9,009단지이며 패널 B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 8,319 단지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주민 2/3의 동의를 받아 외부감사에서 제외된 672단지를 제외하면 이행률은 99.8%가 된다.¹²⁾ 전체 감사대상 단지(9,009단지) 대비 외부감사실시 단지(8,319단지) 비율은 92.3%이다.

패널 C는 아파트 감사에 대한 감사의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감사 받은 전체 아파트 8,319단지 중 적정의견은 6,709단지로서 80.6%를 차지한

<표 5> 아파트 감사 현황

패널 A: 2015년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수

구분	서울	인천	세종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충북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회계감사대상 단지수*	1,210	553	38	418	288	584	542	218	282	384	309	2,555	370	276	382	562	38	9,009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패널 B: 2015년 외부회계감사 이행률

구분	감사대상(A)	감사실시(B)	감사제외(C) (주민2/3동의)	미실시	이행률 (B+C)/A*100
합계	9,009단지 (100%)	8,319단지 (92.3%)	672단지 (7.5%)	18단지 (0.2%)	99.8%

11) 과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의하면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2017년부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로 한 달 앞당겨졌다.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9개월이 지난 후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적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12) 아파트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2호).

〈표 5〉 아파트 감사 현황 (계속)

패널 C: 2015년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의견 결과

구분	단지수	감사인 의견					부적합 단지수(비율) *한정이하
		소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전국	9,009	8,319 (100%)	6,709 (80.6%)	1,458 (17.8%)	32 (0.4%)	93 (1.2%)	1,610 (19.4%)
서울	1,210	1,128	817	283	5	23	311 (27.6%)
인천	553	495	362	123	3	7	133 (26.9%)
세종	38	35	27	8	-	-	8 (22.9%)
광주	418	367	307	56	1	3	60 (20.6%)
대전	288	259	212	44	-	3	47 (18.1%)
부산	584	535	478	54	1	2	57 (10.7%)
대구	542	516	495	20	1	-	21 (4.1%)
울산	218	200	192	8	-	-	8 (4.0%)
강원	282	247	156	85	-	6	91 (36.8%)
전북	384	315	208	104	1	2	107 (34.0%)
충북	309	289	196	90	1	2	93 (32.2%)
경기	2,555	2,387	1,876	469	8	34	511 (21.4%)
충남	370	353	285	58	5	5	68 (19.3%)
전남	276	258	222	29	4	3	36 (14.0%)
경북	382	355	326	26	2	1	29 (8.2%)
경남	562	543	514	27	-	2	29 (5.3%)
제주	38	37	36	1	-	-	1 (2.7%)

패널 D: 부적합 단지에 대한 지적사유

지적사유	건수(비율)	주요 내용
현금흐름표 미작성	517건 (43.9%)	현금흐름표 미작성으로 현금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현금자산의 흐름 등을 점검하는데 한계
회계자료 누락·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214건 (18.2%)	당좌자산·투자자산 등 계정과목 분류 또는 표시오류, 승강기 유지비를 수선비로 계상 등 분류기준 위반,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충당금 등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목적 외 사용 등	186건 (15.8%)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계상 및 목적외사용, 장기 수선계획서 미제출·부적합·미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미산정
갑수익, 갑비용, 수익사업 관련	71건 (6.0%)	갑수익금 관리대상 누락,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의무 미이행
현금 및 통장 관련	29건 (2.5%)	관리사무소 직원의 횡령사건에 따른 현금잔액 오류, 부당한 자금인출,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금 적발
기타	160건 (13.5%)	전기·수도 등 사용료 관련 과다징수액 미정산,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합계	1,177건 (100%)	

* 1,610개 단지 중 833개 단지(약 50%)에 대한 1,177건의 지적사유를 유형별로 분석
 자료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다. 이는 201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 99.6%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 98.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 감사를 받은 첫째여서 외부 감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준비부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정 의견은 1,458단지(17.8%), 부적정의견은 32단지(0.4%)이고 의견거절은 93단지(1.2%)를 기록하였다.

패널 D는 한정 의견 이하의 감사의견을 받은 1,610개 단지 중 833개 부적합 단지(약 50%)에 대한 1,177건의 지적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적된 사유 중 현금흐름표 미작성이 517건(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계자료 누락·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214건(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목적 외 사용 등 186건(15.8%), 잡수익·잡비용·수익사업 관련 71건(6.0%), 현금 및 통장 관련 29건(2.5%), 그리고 기타 160건(13.5%)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 감사가 도입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너무 늦은 시점이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12월말 결산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는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결산보고가 종료된 시점이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아파트 감사의 경우는 모든 결산보고가 종료된 후에 감사가 실시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낮은 감사보수로 제대로 된 아파트 감사를 하기 어렵다. 낮은 감사보수의 논란은 아파트 감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5년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2,000 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모두 13,763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으며,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관리·집행 사례를 적발, 주민들이 돌려받을 돈은 가구당 1만원 수준으로 감사 투입비의 3배에 달했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고,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KBS 뉴스 2016년 5월 15일). 아파트 감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용되면 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입주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므로 적절한 감사보수의 지급으로 적절한 감사시간의 확보를 통해 아파트 감사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과다하게 아파트 감사업무를 수임해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만을 수행하고 있다.¹³⁾ 아직 도입초기이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감사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아파트 감사업무를 과다하게 수임한 것은 어렵게 도입된 아파트 감사의 존립을 훼손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이는 아파트 감사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 도입될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3.3 비영리조직 회계정보의 공시 현황과 문제점

국세청에서는 2009년 4월부터 홈택스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나누어진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중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

13) "...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아파트 500여 곳의 감사업무를 헐값 수임해 부실하게 감사한 사실이 밝혀진 공인회계사 A씨에게 최근 등 록취소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말에는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모 회계법인 대표를 적발해 직무정지 처분하기도 했다..."(파이낸셜뉴스 2016년 9월 4일)

내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의무공시).¹⁴⁾ 다만,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며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수 있다(자율공시). 공시하여야 하는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치계산서 포함),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대표자·이사·출연자 등 기본사항,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이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국세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를 부과하고 주무관청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표 6〉은 공익법인의 결산자료 공시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34,743개(2016 국세통계연보 자료)중 국세청에 결산자료를 공시한 공익법

인은 (재)한국가이드스타에 의하면 7,484개(2017년 1월 16일 현재)로 약 21.5%가 결산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결산자료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가장한 공익법인은 5,420개,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은 6,082개,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2,881개로 나타났다.

국세청을 통한 공시 외에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을 구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http://www.alio.go.kr/home.do>)’을 통해 각종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비영리조직 회계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조직의 공시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 시스템’은 국세청 홈페이지

〈표 6〉 공익법인의 결산자료 공시현황(2015년도 기준)

(단위: 개)

구분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합계	
가동 공익법인 수 ¹⁾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34,743	
결산자료 공시 공익법인 수 ²⁾	- ⁴⁾	1,727	1,490	1,981	426	889	971	7,484	
국세청에 결산자료를 공시한 공익법인 수 ³⁾	복식부기	- ⁴⁾	751	1,076	1,559	373	836	825	5,420
	세무확인	- ⁴⁾	1,315	1,212	1,630	358	829	738	6,082
	회계감사	- ⁴⁾	627	782	641	186	186	459	2,881

1) 자료원: 국세통계연보(2016) “8-6-3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15년 기준)

2) 자료원: (재)한국가이드스타(<http://www.guidestar.or.kr>) (2016년 5월 현재), 전체 공익법인 중 결산자료를 공시한 공익법인 수

3) 자료원: (재)한국가이드스타(<http://www.guidestar.or.kr>) (2016년 5월 현재)

4)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됨.

14) “...국세청은 현재 자산 5억원, 연수입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결산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산서 작성 대상 공익법인은 전체의 약 26%에 해당하는 7,883개다. 이 법인들은 매년 4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뉴시스 2015년 12월 15일)

이지에서 배너를 찾기도 어려우며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홍보부족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국세청에 공시된 정보를 (재)한국가이드스타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회계정보의 공시대상이 제한적이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공시되는 정보도 각 비영리조직 유형별, 각 비영리조직 별로 달라서 상호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IV.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 관련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 관련 개선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4.1 비영리조직의 회계 관련 개선방안

4.1.1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의 법률적 근거 마련

과거에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소관 부서에 따라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영리조직이 각각 다른 명칭의 재무제표, 다른 종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다르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비영리조직 간의 재무제표 비교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였다. 우미향(2015)은 현재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회사, 정부, 비영리조직 관계자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선된 재무제표 작성양식과 적절한 공시는 기부자의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기부자의 기부의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의 의무화는 기부자의 기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에 비영리조직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서 비영리회계실무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제정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외감법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지만 외감법 대상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주무부처는 교육부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 것처럼 각 비영리조직의 형태별로 주무부처가 다르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시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시행으로 회계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1.2 결산서 양식의 체계화

비영리조직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결산공시 양식이 마련되지 않아서 비영리조직의 공시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은 일관된 공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의 <표 2>에서 논의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는 결산서 양

식은 제각각이어서 상호비교가 어렵다.

통일된 결산서 양식의 제정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서 양식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공시”에서 일관된 양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표 7>은 현재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손익계산서 보고양식이다. 큰 틀에서 보면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고 각각을 세분화하여 그 차이를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수입”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를 회계용어인 “수익”으로 바꾸고, 현재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현재의 “순자산의 증감”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비영리조직의 손익계산서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양식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법률이나 회계기준의 개정없이 결산서 양식의 체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2 비영리조직의 감사 관련 개선방안

4.2.1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대상 개선

첫째, 외부감사의 대상을 개선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 중에는 외감법상 외감대상에 속하는 기업보다 자산규모도 크고 수입금액도 큰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이 외감대상인 주식회사보다 더 크므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¹⁵⁾ 이를 위

<표 7>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손익계산서 양식

계 정 과 목	당 기 금 액	전 기 금 액
I. 수입합계		
1. 공익사업합계		
...		
2. 수익사업합계		
...		
3. 기타		
...		
II. 비용합계		
1. 공익사업비용합계		
...		
2. 수익사업비용합계(매출원가)		
...		
3. 기타		
...		
III. 법인세비용		
IV.		
V. 순자산의증감		

15)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신탁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신탁은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신탁(직전연도 총출납액기준 5,000파운드(약 850만원)) 또는 조합원수 500명 이하이고 총자산

해서는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각 비영리조직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¹⁶⁾

둘째, 외부감사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에 자산규모 이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다른 요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는 공익법인등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감법상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받도록 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기준에는 자산 규모 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부채규모와 종업원수를 추가하고 있다.¹⁷⁾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자산총액과 부채 규모, 종업원수 외에도 매출액 추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셋째,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외부감사 실시 여부를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현재 법률상 외부감사가 임의규정인 경우에도 실제로는 외부감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외부감사가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없이 주무부

서에서 업계의 요구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서 임의로 쉽게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실시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감사주기를 결산주기와 일치시켜야 한다.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1년(1 회계연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외부감사주기가 1년이 아닌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금융원 종합검사 실시조합은 제외"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이사장 임기 2년 이상 경과 등"의 조건이 있어서 매년 외부감사가 실시되지 않기도 하였다.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는 매 결산기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 결산기간은 1년이므로 1년마다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2.2 회계감사기준 등 인증기준의 체계화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업종별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회계감사기준에도 여러 법인실체에 대한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새롭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 기존의 회계감사기준과 적용지침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체계적인 외부감사기준의 제정이

기준 5,000파운드(약 850만원) 이하인 신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감독기관의 감사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탁에 대해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NCUA(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의 감사여부와 관계없이 총자산 1,000만달러(약 110억원) 이상 신탁은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총자산 5,000만달러(약 550억원) 이상 신탁은 외부감사인의 범위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김완희 외(2013)).

16) 성현모와 김대식(2013)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와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의 회계제도를 비교 검토한 후, 그 동안 관행으로 해오던 회계처리를 체계화된 회계원칙에 따라 변경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외부감사제도의 도입과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공시를 제안하였다.

17) 이에 대해서는 외감법 제4조와 외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감대상은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2.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을 말한다.

필요하다. 즉, 외부감사에 대한 기본원칙은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으로 해결하고, 새롭게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실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의 회계감사 관련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¹⁸⁾ 예를 들어,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시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주무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새롭게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실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기존의 ‘회계감사기준’과 동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침’과 같은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개선

박성환 외(2013)는 비영리법인 관련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의 상당수가 비영리공익법인의 내부통제 취약성을 지적하고(설문에서 비영리법인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건전성을 주장),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규모가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내부통제절차가 지켜지도록 멘토링을 지원하고 내부감사인 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비영리조직에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적고 인적 구성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영리조직과는 달리 내부통제제도의 부실로 비영리조직에서 문제 발생시 비영리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4.2.4 외부감사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외감대상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¹⁹⁾ 외감대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일부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립기관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개정되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14년부터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4.2.5 외부감사의 성격 명확화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외부감사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행 외감법에 의한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18) 이와 관련하여 김원희 외(2013)는 “회계기준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근거한 회계기준의 ‘통일성’이 중요한 반면에 외부감사기준은 각 실체의 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19)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리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법인과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감사 이외에 추가적인 감사의 성격을 갖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26조 제1항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중 회계 관련 규정의 위반사실 보고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9조).²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감사인이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도입되었으나 일부에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이외에 이행감사(Compliance Audit)와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주된 수요자 중의 하나인 교육부가 필요로 하는 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내용보다는 교육용 재산의 적법한 운영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이 준수하여야 할 재무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확인 등의 내용도 인증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을 활용하거나 업종별 회계감사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실체에 필요한 내용을 회계기준에서 주식 또는 부속명세서로 제시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2) 회계감사기준에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규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김완희 외(2013) 참조).

4.2.6 아파트 감사의 개선방안

아파트 감사와 관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아파트 감사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둘째, 적절한 감사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낮은 감사보수는 적은 감사시간의 투입으로 이어져 적절한 아파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용되면 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입주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므로 적절한 감사보수의 지급으로 적절한 감사시간의 확보를 통해 아파트 감사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파트 감사의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아파트 감사는 적은 보수 문제 외에도 소수의 감사인만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²¹⁾ 소수의 감사인만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파트 감사가 시간에 비해 경제적이지 못하고, 자칫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아파트 감사를 수임하고 보겠다는 식의 감사수임이 우려되므로 아파트 감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부실감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4.2.7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유도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20)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9조(감사보고서) ⑤ 제2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충실히 기술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다음에 간지로 구분하여 적절한 형태로 첨부한다. 이 경우의 작성사례는 별표 제2호와 같다.

21) "... "98개 감사인이 전체 감사 대상의 87.7%인 7293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1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수임해 단기간 안에 감사하는 바람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경험있는 보조자의 부족으로 충실한 감사 수행을 하지 못했다"며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신문 2016년 5월 08일)

것은 외부감사를 규제가 아닌 회계투명성의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사의 경우에도 일부 감사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²²⁾ 이는 비영리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 내부 구성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비영리조직 내부 구성원의 경우에도 외부감사가 본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비영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확인해줌으로써 본인들의 노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외부감사를 인식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은 후에 기부금이 증가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나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4.2.8 비영리조직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

비영리조직의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윤리 규정을 정비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이사회와는 독립적으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를 선임(또는 구성)하여 비영리조직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감사 이전에 비영리조직 내부에서 감사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비영리조직의 본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심있는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오피버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월드비전은 "후원자 모니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부자들이 후원하는 아동들을 직접 만나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확인은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완희 외(2013)).

4.3 비영리조직의 회계정보 공시 관련 개선방안

적절한 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공시제도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공시 관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조직에 대한 공시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공시시스템과 비교할 때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 시스템'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의 편의성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가이드스타(GuideStar, www.guidestar.org)를 참고하여 공시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온라인 공시사이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²³⁾ 우리나라에서도 (재)한국가이드스타(<http://www.guidestar.or.kr>)가 2013년 1월 1일 국세청 고시(제2013-5

22)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관리·집행 사례를 적발, 주민들이 돌려받을 돈은 가구당 1만원 수준으로 감사 투입비(3,500원)의 3배에 달했다(KBS 뉴스 2016년 5월 15일).

23) 미국에서는 IRS에 제출된 비영리 단체의 신고서 자료는 Foundation Center(www.foundationcenter.org)와 가이드스타(GuideStar, www.guidestar.org)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가이드스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공공정보 서비스, 유료서비스를 통한 기부를 원하는 단체의 상세정보 제공, 감독과 인가를 위한 연방, 주, 지역정부와 시스템관리, 유지, 배포 등에 관한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김완희 외(2013)).

호)에 따라 국제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결산서류를 기부활성화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재)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참조).

둘째, 회계정보의 공시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상증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이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양식에 의해 연간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비영리조직이 동일한 수준의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영리조직의 수준별로 공시대상과 공시방법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공시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불성실공시 비영리조직과 성실공시 비영리조직을 공시하여야 한다. 불성실공시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직접적인 제재 또는 공시를 통한 간접적인 제재를 하고, 성실공시를 한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시를 통해 이를 알림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⁴⁾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조직이 비영리조직의 방만경영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제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²⁵⁾

V. 결론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왔다. 그동안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의 문제점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7월에 제정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관련 문제점으로는 투명성이 중요한 일부 비영리조직이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각 비영리조직 별로 외부감사의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통일된 관리감독이 어렵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감사와 관련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너무 늦으며, 낮은 감사보수로 제대로 된 아파트 감사를 하기 어렵다. 셋째, 비영리조직 회계정보의 공시 관련 문제점으로는 비영리조직의 공시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회계정보의 공시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24) 박성환 외(2013)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응답자가 불성실 또는 성실공시 비영리법인 공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 지난 5월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워싱턴DC 및 50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미국암기금, 암지원서비스, 미국아동암기금, 유방암협회 등 4개 단체를 에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이 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억 8,700만달러(2,037억원) 상당 금액을 텔레마케팅, 우편 등 모금비용과 데이트 사이트 구독, 유명 브랜드 속옷 구매, 직원들의 대학 등록금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해 물의를 빚었다. 실제 이 기간 암 환자에게 쓰인 금액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판 여론이 일자 미국아동암기금과 유방암협회는 단체 해산을 약속했다. ... 이같이 미국에서 기부단체를 향해 매서운 칼날을 들 수 있는 것은 담당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부단한 감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PO의 유형, 특징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기관만도 171개에 이른다.” (한국일보 2015년 12월 21일)

첫째, 2017년 7월에 제정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결산서 양식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대상을 개선하고 외부감사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에 자산규모 이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다른 요건을 포함시키고,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하고, 감사주기를 결산주기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업종별 회계감사기준(또는 지침)을 제정하고,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파트 감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감사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감사보수를 지급하며 아파트 감사의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것과 비영리조직의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공시 관련 개선방안으로 공시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회계정보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며, 불성실공시 비영리조직과 성실공시 비영리조직을 공시하여 적정 공시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비영리조직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비영리조직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영리조직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규모가 영세한 비

영리조직에게는 감사와 관련된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또한 감사인은 부분적으로는 재능기부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세한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최소한 지출 관련 증빙이라도 철저히 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계가 기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와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가 규제가 아니라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서 비영리조직의 내부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감사 및 공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회계와 감사 및 공시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Cho, S. P.(2016), "Review and Improvemen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Churches," *Logos Management Review*. 14(4), 69-92. [printed in Korean]
- Hwang, I. T., S. M. Kang, and K. W. Han(2013), "A Study on External Audit and Review for Transparency of Private University," *Research Report of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Public) School*. [printed in Korean]
- Jun, B. W.(2009), "Research on Taxa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0(4), 315-339. [printed

- in Korean]
- Jung, B. W., H. Shawn, and S. J. Park(2010), "A study on the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of Religious Organizations for Transparency of the Accounting,"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34, 313-338. [printed in Korean]
- Kang, T. G.(2014), "A Study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of Religious Corporation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55, 140-159. [printed in Korean]
- Kim, K. Y.(2005), "Improvements of Accounting Treatment and Financial Repor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A Study for Setting the Accounting Guide to Religious Organizations,"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6(4), 33-56. [printed in Korean]
- Kim, W. H., H. J. Nam, K. A. Jeon, C. M. Jung, and O. R. Son(2013), "Transparency Improv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Role of Accounting," *Korean Accounting Journal*. 22(3), 159-197. [printed in Korean]
- Lee, C. H., S. O. park., and Y. H. Kim(2016), "Issues and Recommendations on Taxation of Religious Entitie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4(3), 359-386. [printed in Korean]
- Noh, B. S., and L. Q. Chang(2011),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and Tax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6(4), 285-313. [printed in Korean]
- Park, J. W., Y. B. Yun, and J. Y. Yoon(2004), "A Study of The Tax System of a Non Profit Organizations,"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21(1), 33-73. [printed in Korean]
- Park, S. W., H. Y. Lee, S. A. Kang, Chae, S. J., and J. K. Lee(2013), "A Study on Improvement of Internal Control, External Audit and Disclosure of Non Profit Organization,"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Symposium*. [printed in Korean]
- Park, S. W., H. Y. Lee, S. A. Kang, and S. J. Chae (2015), "A Survey Analysis on the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61, 190-210. [printed in Korean]
- Roh, T. I.(2016), "A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 Accounting Problems and Solution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9(11), 1663-1691. [printed in Korean]
- Seo, S. D.(2014), "A study on Problems of Korean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System and Measures to improve them,"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27, 183-206. [printed in Korean]
- Shin, H. J., and S. H. Suh(2013).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Securing Transparency in Contributions for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1(3), 283-316. [printed in Korean]
- Suh, H. Y.(2016), "Donation Culture Activation Plan through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 *Korea Tax Research Forum*. 16(1), 99-132. [printed in Korean]
- Sung, H. M., and D. S. Kim(2013),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s of the Korean and US Mission Organizations," *Logos Management Review*. 11(1), 13-38. [printed in Korean]
- Woo, M. H.(2015), "A Study on the Impact of Nonprofit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on the Charitable Contribu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printed in Korean]
- Yoon, S. M., and K. Y. Lee(2012), "Tax Planning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Minimization of Tax Burden through Cost-Shifting,"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29(4),

225-255. [printed in Korean]

국내참고문헌

- 강태균(2014),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50집, 140-159.
- 김광운(2005),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상 개선방안: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의 제정을 위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6(4), 33-56
- 김완희, 남혜정, 전규안, 정창모, 송옥렬(2013),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회계저널**, 22(3), 159~197.
- 노병성, 이우창(2011),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6(4), 285-313.
- 노태일(2016), "비영리조직(NPO)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지**, 29(11), 1663-1691.
- 박성환, 이호영, 강선아, 채수준, 이재권(2013),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회계학회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 박성환, 이호영, 강선아, 채수준(2015), "비영리법인 내부통제 현황과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설문연구," **국제회계연구**, 62, 189-210.
- 박정우, 육윤복, 윤주영(2004),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1(1), 33-73.
- 서수덕(2014),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57, 183-206.
- 서희열(2016),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조세연구**, 16(1), 99-132.
- 성현모, 김대식(2013), "한국과 미국 선교단체의 회계제도 비교 사례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1권 제1호, 13-38.
- 신혜진, 서희열(2013),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31(3), 283-316.
- 우미향(2015), "비영리법인 회계제도의 개선이 기부금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성만, 이강영(2012), "비영리법인의 세무계획: 원가이전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세무학연구**, 29(3), 225-255.
- 이천화, 박성욱, 김영훈(2016),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4(3), 359-386.
- 전병욱(2009),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의 연구: 한국방송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0(4), 315-339.
- 정병욱, 손혁, 박성진(2010),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일화된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 **국제회계연구**, 34, 313-338.
- 조성표(2016), "교회 회계기준들에 대한 비평과 개선방안," **로고스경영연구**, 14(4), 69-92.
- 황인태, 강선민, 한기원(2013), "사립대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제도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보고서.

The Improv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System

Kyu An Jeon*

Abstract

In recent years, interest in non-profit organization's transparency has increased as the import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 increases. In the meantime, much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about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counting, auditing and disclosure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that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of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be prepared as a way to improve the accounting of non-profit organization, and that the settlement forms should be systematized so that they can be compared with each other.

Second, as an improvement measure related to non-profit organization's audits,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improve their external auditing targets and include other requirements such as the amount of income and the value of property in addition to the size of assets, and conduct external audits. In this case, it is proposed to compulsorily comply with the law and make the audit cycle consistent with the settlement period. In addition, in the case of external audit of non-profit organization, it establishes industry-specific audit standards, builds and improve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non-profit organization, and enhances quality control of non-profit organization when performing external audits. It was suggested to clarify the personality. We propose to improve the quality control system of the appraisal of apartments by accelerating the apartment inspection period and paying proper audit fees. In addition, we propose to induc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external auditors and strengthen internal audit func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order to activate external audit of non-profit organiz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kajeon@ssu.ac.kr), First Author

Third, I propose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 of disclosure system by expanding the object of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disclose non-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 and sincerity disclosure non-profit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disclosure related to non - profit organization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

Key Words: 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standards, auditing